第252回國會(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05年2月25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
- 2.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
- 3.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 4.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 5.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 6.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 7.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 8.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 9.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 10.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 12.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 13.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 14.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 15.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
- 16.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 의안
- 18.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동의안
- 19.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 20.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 21.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

附議된案件

1.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	3
2.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	10
3.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12
4.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12
5.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12
6.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12
7.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12
8.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3
9.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3
10.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3

11.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3
12.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3
13.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15
14.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15.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 15
16.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16
17.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 16
18.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동의안 16
19.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
	안
20.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유기홍・김태홍・강창일・고진화・배일도・최순영・
	강기갑・강기정・강길부・강혜숙・곽성문・구논회・권영길・김동철・김원웅・김영숙・김재윤・
	김종률・김충환・김태년・김현미・김형주・김홍일・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문병호・
	문학진 • 민병두 • 박명광 • 박찬석 • 박창달 • 배기선 • 백원우 • 복기왕 • 서갑원 • 선병렬 • 송영길 •
	신중식ㆍ심상정ㆍ안상수ㆍ안택수ㆍ양승조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제항ㆍ유시민ㆍ윤건영ㆍ윤원호ㆍ
	윤호중ㆍ이경숙ㆍ이미경ㆍ이성권ㆍ이영순ㆍ이은영ㆍ이인영ㆍ이재오ㆍ이종걸ㆍ이화영ㆍ장경수ㆍ
	장복심 · 장향숙 · 전병헌 · 정갑윤 · 정봉주 · 정장선 · 정청래 · 정화원 · 제종길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수・지병문・진수희・천영세・최용규・최인기・최재성・현애자・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21.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김동철・김춘진・정의화・이종구・천영세・이낙
	연・양형일・구논회・김선미・김영주・조성래・이강래・조배숙・유기홍・유시민・유필우・
	이기우・이상경・채수찬・김부겸・김우남・김태년・김혁규・노영민・문학진・신국환・신중
	식 · 이용희 · 이시종 · 조일현 · 지병문 · 한광원 · 정세균 · 김기석 · 김낙순 · 김맹곤 · 박상돈 ·
	우원식 · 우윤근 · 원혜영 · 윤호중 · 이호웅 · 장복심 · 정장선 · 주승용 · 최철국 · 오제세 · 김교
	흥 · 김원웅 · 백원우 · 신계륜 · 이경숙 · 이인영 · 장영달 · 장향숙 · 정봉주 · 정청래 · 홍미영 ·
	최성·최재성·강봉균·권선택·김한길·신기남·안영근·양승조·우제창·이광재·이상
	민 · 이원영 · 이은영 · 전병헌 · 정동채 · 강길부 · 강성종 · 김영춘 · 김희선 · 문병호 · 문석호 ·
	박병석 · 복기왕 · 송영길 · 유승희 · 최규성 · 최재천 · 홍창선 · 강혜숙 · 김성곤 · 김현미 · 문희
	상 · 박찬석 · 배기선 · 서갑원 · 유재건 · 이철우 · 장경수 · 정성호 · 제종길 · 조성태 · 김재홍 ·
	노웅래・노현송・신학용・안민석・우제항・유선호・윤원호・이광철・이근식・이화영・최규
	식·한병도·김재윤·김태홍·민병두·박기춘·서재관·선병렬·심재덕·강기정·우상호·
	유인태·강창일·염동연·이재웅·강재섭·김성조·김양수·곽성문·김무성·권오을·고진
	화·박재완·김재경·권경석·김문수·김기춘·권철현·박진·박세일·김태환·박계동·김
	충환 · 김용갑 · 심재엽 · 박세환 · 서상기 · 박성범 · 김희정 · 김학송 · 안경률 · 박형준 · 송영
	선・박찬숙・유승민・박희태・안상수・엄호성・유기준・유정복・홍준표・배일도・이주호・
	이계진 · 이계경 · 이경재 · 서병수 · 임인배 · 이덕모 · 이병석 · 진수희 · 장윤석 · 전여옥 · 이인
	기·정갑윤·최연희·정병국·전재희·정두언·황우여·정종복·정문헌·정화원·한선교·
	황진하ㆍ최경환ㆍ정형근ㆍ최구식ㆍ강기갑ㆍ권영길ㆍ이영순ㆍ심상정ㆍ최순영ㆍ단병호ㆍ노회
	찬 · 김효석 · 손봉숙 · 이정일 · 이상열 · 이승희 · 김홍일 · 한화갑 · 김낙성 · 정몽준 · 최인기
	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니다.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셔서 연설을 하시겠 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입장)

(일동 기립・박수)

(일동 착석)

○대통령 노무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 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중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봉인 해제와 사찰단의 추방으로 맞서고, 언론은 무력제재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는 긴박한 상태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한미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 번 가 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한미동 맹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와 함께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온갖 추측과 해석 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대북 송금 특 검 문제, 모두 하나 같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저는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그리고 열린우리 당의 창당,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전 에 없던 일들을 저는 때로 결단하고 때로 감당해 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행정수도 위헌판 결,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2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깊어지고 좀더 넓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의 밑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을 구상하는 그

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내린 다양한 평가 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 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여정부는 가계 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는 끝없는 소비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실업은 늘고 가계 수입은 줄어만 가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교육비로 서민의 부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 위에 북핵 위기로 인한 불안 심리, 이라크 전쟁과 고유가, 카드채 발 금융 위기까지 겹치고 위기설이 난무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 여러분 은 지난 2년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 되고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 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 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것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남미 형 파탄과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거론하며 우리 경 제를 위기 또는 파탄으로 진단하던 사람들도 이 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 론이 없는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수)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고유가와 낮은 환율을 이겨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미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힘차게 그리고 길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 간의 경쟁력격차, 그리고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뜻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부터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앞으로는 좀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데 인식을 가지고 고용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와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일자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울러서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전셋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신년 회견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근본적 인 대책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 기 중으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거래가 전산화돼서 부동산 거래가 100% 노출될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박수)

건설경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경 기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건설 경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 시 잡고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선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 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이나 경제 규모, 제조업 기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의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 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국민소득이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나가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 지원 서비스와고급 서비스산업, 그리고 레저・문화 산업의 발전입니다.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이와 같은 기업 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 이 발전해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 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 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산업 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 요합니다. 금융산업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 준도 높아집니다.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평가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물류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지원 서비스 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18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류비용은 경쟁 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부터 업종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경쟁력 강화 대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빠 른 시일 내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진 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유학 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합니다. 해외로 나간 돈 말입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박수)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 나가야 합니다.

복합 소비 산업인 문화·관광·레저 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는 그 자체가 삶의 질입니다. 아울러서 산업입니다.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이 분야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영화·음악·드라마 등 문화 콘 텐츠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 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입니다.

90년대 WTO 체제 편입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WTO,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이제 우리는 '선진 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농 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겠 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그래서 도농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대책도 착실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 경제를 하려면 먼저 선진 사회로 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의 효율성때문입니다. 경쟁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불법도 반칙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면 특권과 특혜도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자면 사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 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특권과 유착, 불법 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정경유착, 정 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 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자면 이러 한 유착과 공생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 고 여기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해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독재 권력과 권력기관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정보 통제와 조작, 고문과 협박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정경유착의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권력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정경유착은 없을 것입니다. 없게 해야 합니다. 권력기관들도 이상 더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 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저런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시대에도 권언유착의 관계는 지속되기도 했습니 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 소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도 언론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박수)

적어도 이제 고위 공무원이 기사 빼 달라고 언론인들에게 매달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권은 정권으로서 제 갈 길을 가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정책 관련 기사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석과 비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비판은 정책으로 수용하고 하나하나 회신까지 보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기사가 있을 때는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일일이 법적 대응까지 합니다. 정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언론문화를 위해서, 선진 언론으로 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선진 언론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좀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 동안 확실히한번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좀 억울하겠다, 좀 가혹하겠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 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몇 년 전 대전에서 어느 변호사의 장부가 공개되면서 법조인 몇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조사받은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행상 허용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사의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응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어쩔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참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면 서 장사를 하는데 나만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하자니 경쟁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반 칙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 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합니다.

(박수)

지금 세금 부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시민, 그래서 누가 좀 보자고 해도 오금이 저리지않는 그런 떳떳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수)

이것이 바로 선진 한국입니다.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 정 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 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규칙에 따라서 경쟁하고 결과 에 승복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 본질입니다.

독재정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폭력과 공작으로 상대를 타도하고 패배자 는 배제해 버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정치

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대결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서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 치인이 발명한 득표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 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왔습니다. 분열에 맞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열린 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가 탄핵을 당하는 어려움 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17대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표를 얻는 데 성공했으나 아직도 지역구도를 해소했다 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 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태어났습니다. 독 재권력이 가혹하고 강고할수록 타협 없는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타협 없는 투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 만 정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자기지배의 원리에 맞고국민주권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선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정부입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 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은 유례 없이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 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거문화의 개혁에 앞 장서 온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관계자 여 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 분 모두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이런 저런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당내 선거는 정치선거만큼 그 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문화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매수와 거 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아울러서 정통 성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 착을 위해서 각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이제 우리 정부의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40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30위권으로 평가된 자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수)

비교적 잘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내 에 20위권, 1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 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도 전략은 역시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그리고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분권과 자율입니다.

2003년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로드맵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2004년은 변화관리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나하나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

다. 올해는 이 혁신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공공기 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효율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정부 기록보존이부실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통계의 부실, 데이터베이스의 부실도 지적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통계관리 등 기본 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정보 공개, 보안 시스템 등등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정부를 공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 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부가 보다 진실되게 말하고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이만큼 버텨 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지금의 수준이 목표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도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미래 에너지 대책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진실된 자세와 책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 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구

조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 50대 초반 일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사람을 축적하지 않는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의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실된 주장을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몇십 년 후에는 고갈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률 로 재정 재계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급 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 푼이라도 수익을 늘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 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 각합니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나누어 지고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 달라고 하면 결코 해결의 길이 나오 기 어렵습니다.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 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 해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는 사스환자 못 들어 온다며 길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다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설 땅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것이 명실상부한 선진사 회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역사는 왜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강구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강구하고 그렇게 하여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이것은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거사 청 산의 방법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 다.

두 나라는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릅니다.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 버리고 미래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을 줄였습니 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당과 국회가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군 사독재 시절의 그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공개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부처 간,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

다.

웬만하면 이것은 결론을 내고 국민들에게 공개 했으면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번번이 공개하지 않다가 비난만 듣는 것이 일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국정을 읽는 방법도 새롭게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국정 을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변화는 선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합니다.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 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습니 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외교 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반드시 따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10년 후의 한미 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 있게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서 동북 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 화를 굳건히 지켜 낼 것입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장래가 밝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가장 비관적인 전망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성취 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오 히려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수)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 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는 '선진 한국'이라는 얘기를 한나라당이 먼저 연구하고 채택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표절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미처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한나라당과 우리의 생각이 우연히 일치해서 선진 한국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 검 토하겠습니다.

(웃음·박수)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그리고 정당을 하시는 여러분 각 당에 모두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당의 성취와 발전이 우리 국가의 발전으로 함께가는 그런 새로운 해를 올해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대통령 퇴장)

(일동 기립·박수)

○의장 김원기 대법관임명동의안 등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 시기 바랍니다.

2.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

(10시4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관에 양승태를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7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양승태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지난 2월 16일자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오늘 의석에 추가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양승태)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양승태)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 원장대리 우윤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의원 여 러분!

전남 광양시·구례군 출신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 은 도덕성과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 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관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 김재형 서울대교수,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유영일 변호사등 총 4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후보자 개인의자질과 대법원의 바람직한 구성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 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 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사 항입니다.

후보자는 판사로서 30년간 재직하고 있으면서 일반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처리한 경력이 있고, 특히 IMF하에서 파 산부 부장판사로서 회사정리 사건을 처리한 경력 과 특허법원장으로서의 특허 관련 사건을 처리하 는 등 법원 내에서 재판 업무나 재판 외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은 대법원에 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려는 일반 국민의 요구 에 따라서 제3심 법원으로서의 역할로 집중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법원은 최고법 원으로서 정책 형성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 고,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다 양한 경력자로서 대법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96년 사법 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한 때에는 국민에게 생소 한 제도로서 그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형 폐지에 관해서는 후보자 개인 입장으로서는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그 폐지에 관한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가 위헌제청을 한 바 있는 호주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상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넷째, 후보자의 재산, 병역, 도덕성 등 개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 관계 및 개인적 도덕성 측면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 다. 또한 참고인 전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의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및 신망을 갖추었고 별다 른 하자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경우 영상 편집을 통해 일 반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의 견을 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친근하고 가까운 법원이 되기 위한 방안,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도울 방안, 어 려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써 달라는 국민들의 바 람 등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하여 질의 답변 중 대법관 후보자에게 바라는 내용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건의하는 형식의 영상 물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개최되 는 인사청문회가 국민과 거리감을 줄이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바람 직한 제도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는 건의사 항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양승태)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 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법관(양승태)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양승태)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 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 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선택 의원, 이광철 의원, 임종인 의원, 정봉 주 의원, 김기현 의원, 박형준 의원, 유기준 의원, 이영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 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 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 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 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명패와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55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61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가 234표, 부 24표, 무효 3 표로서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3.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 약비준동의안
- 4.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 조조약비준동의안
- 5.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 6.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사사 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 7.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 약비준동의안

(11시1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과필리 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 정 제4항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 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 준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의 이화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형사사법 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들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형사사건에 있어서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증거물의 제공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취득한 정보나 증거 등을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어떠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약의 규 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조 거절 사유와 관련하여 타일랜드· 인도·카자흐스탄·필리핀과의 경우 임의적 거절 사유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과 의 경우 임의적 거절 사유와 절대적 거절 사유로 이원화하고 있고,

둘째, 공조요청 경로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 필리핀과의 경우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 나 또는 직접 연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 면, 인도와의 경우 외교경로, 타일랜드와의 경우 중앙기관 간에 행하는 것으로 하며,

셋째,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 필리핀과의 경우에서만 조약의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어떠한 분쟁도 외교경로를 통하여서만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와의 경우구체적 분쟁해결 절차 없이 협의 절차에 대하여서만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5건의 각 동의안은 2005년 2월 24일 제 252회 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 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 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사사법 공조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필리핀공 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대한민국과필 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 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대한민국과카 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 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대한민국과인

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 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대한민국과베 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 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대한민국과타 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 준동의안
- 9.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 약비준동의안
- 10.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 도조약비준동의안
- 12.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 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1시2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과인도 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이상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정문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범죄인들의 상대국 도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들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하며,

둘째,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피청구국의 당국에 회부하도록 하고.

셋째, 인도청구 및 긴급인도구속청구와 범죄인 인도 및 재산 인도 등에 필요한 서류·절차 및 요건 등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상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인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베트남·카자흐스탄·페루·과테말라와의 경우에서는 국가원수 등에 대한 공격 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인도와의 경우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등을 일으키는 화기·폭발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우리 측이 긴급인도구속의 청구경로와 관련하여 베트남·카자흐스탄·과테말라·인도와 의 경우 외교경로 또는 법무부를 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페루와의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하고.

셋째, 우리 측의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베트 남·과테말라·인도와의 경우 법무부, 페루와의 경우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것 등입 니다.

이상 5건의 각 동의안은 2005년 2월 24일 제 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서 만장일치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 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인인 도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인도공화 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 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 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대

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 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 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대한민국과베 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3.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 14.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 15.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

(11시3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3항 미주개발은행설 립협정 수락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미주투자공 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제15항 다자투자기금설 립협정 수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 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최성** 통일외교통상위 원회 최성 의원입니다.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17대 국회 및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전 정부 부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경제전쟁의 시대에 우

리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무 대에서도 활동하기 용이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본 동의안들은 의 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들의 제출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주개발은행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미참여한 지역금융기구로서 그간 미주개발은행 내부 증자 등 참여기회가 없어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가 보유지분 504주를 포기함에 따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미주개발은행 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인 결과, 미주투자공사·다자투자기금에도 동시에 가입한다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각각 2004년 11월 미주개발은행·미주투자공사 및 다자투자기금의 총회 등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의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은 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미주개발은행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정으로 증자가 가능하며, 미주개발은행은 회원국, 회원국의 기업 등에 대하여 대출 또는 보증을 실시하고, 각 회원국은 총회에참석하는 5년 임기의 위원과 대리위원 각 1인을임명하는 것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은 역내 민간기업에 대하여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미주투자공사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미주개발은행의 비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일자 및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자원 및 인력 개발, 고용 창출의 유인이 있는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은 역내 민간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다자투자기금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은 기술협력소기 금 등을 통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대출 등에 대한 승인은 각 공여국이 지명한 대표로 구성된 공 여국위원회가 행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2005년 2월 24일 제252회 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심사보고서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미주개발은행 설립협정 수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다자투자기금 설립협정 수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 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 동의안

17.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 준동의안

18.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동의안

(11시4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정부와 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 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 협력협정 체결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3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성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성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 안과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은 인력 수출을 포함한 투자 소득에 대하여투자 진출국 및 투자 유치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해체약국 간 인력과 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을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건의 비준동의안 중 공통적인 주요 내용은 이 협약은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안에 서명 이후 현행 조세에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가되는 조세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사업 이윤은 기업의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 이윤에 한하여 과세할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있는 것 등입니다.

2건의 동의안 중 상이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 등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에는 18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수단의 경우는 12개월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과 관련하여 아랍에 미리트연합과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배당 총액의 10%로 하고 있는 반면, 수단과는 적어도 25%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배당 총액의 15%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 정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본 동의안은 국제이주기구가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함으로써 국제 이주기구와 우리나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 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이주기구 및 그 직원은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대한민국에서 향유하고, 국제이주기구는 이주 문제에 관한 자문, 이주 정보, 내·외국인의 이주, 이주 지원 등 이주 관련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건의 각 동의안은 2005년 2월 24일 제 252회 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 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 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정부와수단 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 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 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 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 준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대한민국과아 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 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 정 체결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 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 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 계획동의안

(11시5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산추·하 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 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신중식**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신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4년산 추·하곡동의안은 2004년산 추·하곡의 수매가격을 4%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농가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각계각층 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 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외 쌀 가격 격차의 축소 필요성, 공급과잉 기조의 해소를 위해 인하안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쌀산업이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어려운 농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매가 인하안에 동의할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4년산 추·하곡수매가를 2003년산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 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 안 심사보고서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 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수정안에 정부는 동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2004년산추·하곡의약정 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 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2004 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 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은 농림 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유기홍·김태홍·강창일·고진화·배일 도 · 최순영 · 강기갑 · 강기정 · 강길부 · 강혜 숙 · 곽성문 · 구논회 · 권영길 · 김동철 · 김원 응ㆍ김영숙ㆍ김재윤ㆍ김종률ㆍ김충환ㆍ김태 년 · 김현미 · 김형주 · 김홍일 · 노웅래 · 노현 송 · 노회찬 · 단병호 · 문병호 · 문학진 · 민병 두 · 박명광 · 박찬석 · 박창달 · 배기선 · 백원 우 · 복기왕 · 서갑원 · 선병렬 · 송영길 · 신중 식 · 심상정 · 안상수 · 안택수 · 양승조 · 오제 세 · 우상호 · 우제항 · 유시민 · 윤건영 · 윤원 호・윤호중・이경숙・이미경・이성권・이영 순 · 이은영 · 이인영 · 이재오 · 이종걸 · 이화 영·장경수·장복심·장향숙·전병헌·정갑 윤 · 정봉주 · 정장선 · 정청래 · 정화원 · 제종 길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수 · 지병문 · 진수 희 · 천영세 · 최용규 · 최인기 · 최재성 · 현애 자·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12시0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0항 일본의 역사교 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소속 이화영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당 의장 후보님들이 너무 많 아서 제가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역사교과 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촉구결의안은 2006년에 사용될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들이 한국사를 축소 또는 왜곡하여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1982년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당시 한국과 중국의 반발로 일본 문부대신은 역사교과 서의 검정기준으로서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를 배려해 서 기술한다는 일명 근린제국조항을 공식적으로 일본 측에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표적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2005년 4월의 교과서 검정 결과 공식 발표를 앞두고 맹렬하게 역사왜 곡교과서 채택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우익정치인들도 이 모임과 활동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2006년에 사용될 역사교과서를 검정함에 있어 바로이 근린제국조항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 양 국 간의 선린우호관계와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 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내용 중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 일부 문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기홍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 촉구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심사 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일 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은 통일외 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

안(김동철·김춘진·정의화·이종구·천영 세 · 이낙연 · 양형일 · 구논회 · 김선미 · 김영 주・조성래・이강래・조배숙・유기홍・유시 민 · 유필우 · 이기우 · 이상경 · 채수찬 · 김부 겸 · 김우남 · 김태년 · 김혁규 · 노영민 · 문학 진 · 신국환 · 신중식 · 이용희 · 이시종 · 조일 현 · 지병문 · 한광원 · 정세균 · 김기석 · 김낙 순 · 김맹곤 · 박상돈 · 우원식 · 우윤근 · 원혜 영 · 윤호중 · 이호웅 · 장복심 · 정장선 · 주승 용 · 최철국 · 오제세 · 김교흥 · 김원웅 · 백원 우 · 신계륜 · 이경숙 · 이인영 · 장영달 · 장향 숙 · 정봉주 · 정청래 · 홍미영 · 최성 · 최재성 · 강봉균 · 권선택 · 김한길 · 신기남 · 안영근 · 양승조 · 우제창 · 이광재 · 이상민 · 이원영 · 이은영 · 전병헌 · 정동채 · 강길부 · 강성종 ·김영춘 · 김희선 · 문병호 · 문석호 · 박병석 ·복기왕·송영길·유승희·최규성·최재천 · 홍창선 · 강혜숙 · 김성곤 · 김현미 · 문희상 박찬석 · 배기선 · 서갑원 · 유재건 · 이철우 · 장경수 · 정성호 · 제종길 · 조성태 · 김재홍 ·노웅래·노현송·신학용·안민석·우제항 · 유선호 · 윤원호 · 이광철 · 이근식 · 이화영 ·최규식·한병도·김재윤·김태홍·민병두 · 박기춘 · 서재관 · 선병렬 · 심재덕 · 강기정 · 우상호 · 유인태 · 강창일 · 염동연 · 이재웅 · 강재섭 · 김성조 · 김양수 · 곽성문 · 김무성 권오을 · 고진화 · 박재완 · 김재경 · 권경석 김문수 · 김기춘 · 권철현 · 박진 · 박세일 · 김태환 · 박계동 · 김충환 · 김용갑 · 심재엽 ·

박세환 · 서상기 · 박성범 · 김희정 · 김학송 ·

안경률・박형준・송영선・박찬숙・유승민・ 박희태・안상수・엄호성・유기준・유정복・ 홍준표・배일도・이주호・이계진・이계경・ 이경재・서병수・임인배・이덕모・이병석・ 진수희・장윤석・전여옥・이인기・정갑윤・ 최연희・정병국・전재희・정두언・황우여・ 정종복・정문헌・정화원・한선교・황진하・ 최경환・정형근・최구식・강기갑・권영길・ 이영순・심상정・최순영・단병호・노회찬・ 김효석・손봉숙・이정일・이상열・이승희・ 김홍일・한화갑・김낙성・정몽준・최인기 의원 발의)

(12시0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1항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동철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2005년 2월 1일 본 의원을 포함한 20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비단 시장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한반도 서남권 지대 개발을 통한 거시적인 국토 균형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창출과 국가 미래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나아가 대륙철도(TSR, TCR)와의 연계및 대 중국 무역 전초기지로서 역할 등 잠재적국가이익을 고려한다면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에서는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하고 2006년 착공 및 2010년 완공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 운영하도록 촉구하 였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건교부의 보완 용역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호남고속철

도 건설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검 토하되 현재 진행 중인 보완용역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이 확정되 면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공사에 착 수하고 조기에 완공하도록 할 것이며, 호남고속 철도건설추진기획단의 구성은 현재 국토사업기획 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삭제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는 17대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2가 넘는 205명의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 나 지역을 떠나 흔쾌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이 단순히 수도권과 영 남권에 집중된 불균형 정책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처 서명에 참여하시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도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이유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 심 사보고서

>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기권 7인으로서 호 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은 건설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잠시 인사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오늘밤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다음 달 14 일까지 멕시코와 미국을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 방문길에 오 르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멕시코 이민 100주년 공식 기념일이 27일에 있고 이날 중요한 행사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회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에 저는 우리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오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보면 과거 같으면 여러 가지 참불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도불구하고 여야 간에 상생의 정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잘 국회를 운영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특히 행정 중심 복합도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대단히 염려가 많았습니다마는, 여야가 참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통과 산고 끝에 이렇게 원만히합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여기에 수고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대로 나가면 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던 우리 정치,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참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정치, 그런 국회로 거듭나는 날도 멀지 않았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되는 분과위원회와 본회의, 여기에서 모쪼록 상생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3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 준동의안

투표의원(201인) 찬성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공성 진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낙 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명 주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부 겸 김 문 수 김 병 호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계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세 환 박 재 완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복기 왕 서병수 송 영 길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안 경 률 신 국 환 심 재 덕 심 재 철 안 병 엽 안 택수 안 민 석 안 영 근 양형일 엄호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유기홍 워 혜 영 워 희 룡 유 승 회 유 재 건 유정복 유필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경숙 이계경 이 계 안 이계진 이 근 식 이 광 철 이 규 택 이 기 우 이 명 규 이미경 이 방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 승희 이시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웅 이 인 영 이재창 이종구 이 철 우 이 해 봉 이혜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헌 장 영 달 전 여 옥 정덕구 정 두 언 정 갑 윤 정문 헌 정 병 국 정봉주 정성호 정 세 균 정의화 정장선 정 종 복 정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성래 조성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성영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성 최용규 최 인 기 최 철 국 최 재 처 한 광 원 한 병 도 한 명 숙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홍 준 표 황 진 하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 약비준동의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진화 고 흥 길 공성 진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광 원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기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덕 규 김동철 김명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양 수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주 김용 갑 김 우 남 김 재 홍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정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노 영 민 김희정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계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박 형 준 짉 박 희 태 서병수 복 기 왕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국 환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안 택 수 양형일 엄호 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기홍 유 승 희 유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필우 윤 건 영 이 강 두 이강래 윤 원 호 윤 호 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규 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 방호 이 병 석 이상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석현 이성권 이 상 열 이 승 희 이시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재 웅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구 이 철 우 이 해 봉 이 재 창 이 화 영 임 인 배 이 혜 훈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헌 장 향 숙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덕 구 정 문 헌 정병국 정 봉 주 정성호 정세 균 정의화 정장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성 래 조성 태 주성 영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지 병 문 주 승용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성 최 연 희 최용규 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명 숙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 동의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4인)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고진화 고 흥 길 공성진 구 논 회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동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애 실 양 수 김 영 덕 김선 미 김 김 영 주 김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정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희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민 병 두 박계동 문 희 상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형 준 박 희 태 배일도 복기 왕 서 병 서 상 기 서 갑 원 수 서 혜 석 선 병 렼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국 환 심 재 심 재 철 안 경 덕 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형일 엄호 성 양 승 조 우 상 호 우 워 식 우 윤 근 오 영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 인 태 유재건 유 정 유필우 복 윤 건 영 유 호 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경재 이계경 이 계 안 이 광 철 이규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연 이 병 이 명 규 이미경 석 이상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시종 이성권 이 승 회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재 웅 이 재 창 이종구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인배 장 경 수 임 종 인 임 채 정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병 국 정봉주 정세 균 정 정성호 정 의 화 정장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성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성 영 주 승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경 최구식 최 규 성 환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한 광 원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 조조약비준동의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11인)

장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기현 김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명자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홍 김 재 유 김 정 부 정 훈 춘 진 김 충 환 김 김 김태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희 정 김 현 미 김 형 오 형 주 김 남 경 노 영 민 노 웅 래 필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호 맹 형 규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계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형 준 박 찬 석 박 희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복 기 왕 서 병 수 서 갑 원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국 환 심 재 덕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수 양 승 조 양형일 엄호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회 룡 원 혜 영 유 기 준 유기홍 승 회 유 인 태 유 유 재 건 유정복 유필우 유 건 영 이강두 이강래 윤 원 호 윤 호 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 광 철 이규택 이근 식 이기우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 상 민 이상배 이 상 열 이성권 이시종 이 승희 이영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재 웅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헌 전 여 옥 정덕구 정 갑 윤 정 문 헌 정봉주 정 두 언 병 정 국 정세 균 정 장 선 정성호 정의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경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연 희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천 한 광 원 한 명 숙 최 철 국 한 병 도 허 태 열 현 애 자 한 선 교 홍문표 홍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 준동의안

투표의원(208인) 찬성의원(208인)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재 섭 강 창 일 고 흥 길 고진화 공성진 구 논 회 권경석 권선 택 권 영 길 김 광 원 권 오 을 권 철 현 김기춘 김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명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양수 김 영 주 김 영 덕 김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유 김정부 김 정 김 재 홍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태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김 혁 규 김 현 미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회 찬 단 병 호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병두 박계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변 재 일 복기 왕 서 병 수 서 갑 원 서 재 관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신 계 륜 신 국 환 신 학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택수 안 상 수 안 영 근 양 승 조 엄호성 양형일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 재 건 유기홍 유승희 유 인 태 유정복 유필우 유 워 호 유 건 영 이강두 윤 호 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낙 연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미경 이 방호 이 병 석 이상득 이 상 민 이상배 이 상 열 이석현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영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오 이 재 창 이종구 이 해 봉 이 철 우 이혜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종인 채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임 정 장 향 숙 전 병 헌 정덕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병 국 정 봉 주 정 정성호 정세 균 의 화 정 종 복 정 정청래 정화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성태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성 영 주 승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병국 최 성 최연 회 최용규 최 철 국 한 광 원 최 인 기 최 재 천 한 병 도 한 명 숙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 의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19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공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혐 김 광 워 김기 춘 김기 현 김 낙 순 덕 규 김 낙 성 김 김 동 철 김 명 주 김명자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선 미 김 애 실 김 김 영 주 김 영 덕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재 윤 김 재 홍 김 김정부 김 춘 진 태 홍 김 태 환 김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노 영 민 김희정 노 웅 래 노 현 송 노회 찬 단 병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계동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창 달 박 찬 석 백 원 우 배일도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서 혜 석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승 조

양형일 엄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기홍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정복 유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기우 이 명 규 이미경 이방 이 병 이 상 민 호 석 이상배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승 희 이 유 성 이은 이인기 이 인 영 옂 이재오 이 재 창 이종걸 이재 웅 이 화 영 이종구 이 해 봉 이혜훈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덕구 정 두 언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의화 정 청 정 장 선 정 종 복 래 정화원 조 배 숙 조성 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혅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경환 최 구 식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성 최 연 희 최용규 최인기 재 최 철 국 한 광 원 최 천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문표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2인)

김양수 우원식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투표의원(205인)

구묘의원(203인) 차서이의(204이)

찬성의원(20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정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공성 진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낙 성 김 덕 규 김 동 김 김 낙 순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영 주 김양수 김용 갑 김 우 남 김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희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호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계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회 태 배일도 백 원 우 재 복 기 왕 변 일 서 갑 원 서병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선 병 렬 영 길 석 송 신 계 륜 신 중 식 신 학 용 신 국 화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택 수 안 상 수 안 영 근 양 승 조 오 영 식 양형일 엄호성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상 호 우 유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기홍 유 기 준 유 승 희 유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경숙 이 강 래 이경재 이계 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 상 민 이상배 이 상 열 이석현 이 성 권 이 승 회 이시종 이 원 영 이 은 영 이영순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재 이 재 창 웅 이 종 걸 이 종 구 이 해 봉 이혜훈 임 인 배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헌 병 국 정 정성호 정세 균 정 의 화 장 선 정 종 복 정 청 정화원 조 배 숙 정 래 조성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성 영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경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병국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최용규 최인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혀 애 자 문 표 홍 재 형 홋 황 우 여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김 영 덕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 의안

투표의원(206인) 찬성의원(20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정 강 창 일 고진화 고 흥 길 공성 진 권경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영 길 권 철 현 김기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낙 순 명 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김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정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춘 진 김 충 환 김태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희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민 병 두 박 명 광 문 희 상 박계동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배일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렼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아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승 조 안 영 근 양 형 일 엄호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혜 영 유기준 유기홍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필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 광 철 이미경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 상 민 이상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재웅 이재 이종걸 이 종 구 창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종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전 병 헌 장 영 달 장 향 숙 정 갑 윤 정덕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의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조 배 숙 조성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성영 주 승용 조 일 현 지 병 문 최 구 식 채 수 찬 영 세 천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성 최용규 최인기 최 재 천 최 연 회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유 정 복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진화 고 흥 길 공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양 수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주 김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정부 김정훈 충 환 김 태 홍 김 종 률 김 춘 진 김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웅 래 단 병 호 노 영 민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병두 박계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배 일 도 준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송 영 길 선 병 렬 신 계 륜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경 률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조 양형일 엄호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유기준 원혜 영 유기홍 유 승 희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근식 이기우 이 광 철 이 명 규 이미경 이 방호 이 병 석 이상득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 승희 이시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재오 이재 이 재 창 이종걸 웅 이종구 이 해 봉 이혜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종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덕구 정 두 언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의화 정청 정화원 조 배 숙 래 조성래 조성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성 영 주 승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 희 최 규 식 최 성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찬성의원(206인)

이 상 배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 조약비준동의안 투표의원(20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정 강 재 섭 강 창 일 고 흥 길 고진화 공성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기춘 김기현 김 덕 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명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김양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재 유 재 홍 김정부 김 정 김 김 훈 김 종 률 김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학 진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계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화 박 승 환 박 재 완 박 박 창 달 진 박 찬 석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백 워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병 수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송 영 길 렬 신 계 륜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수 양 승 조 양형일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워 식 우 유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기홍 유 승 희 유인 태 유 재 건 유필 우 유정복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강 두 유 호 중 이 강 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 승희 이시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종걸 이종구 이 해 봉 이혜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종인 채 정 임 종 석 임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성호 세 균 정 정의화 정장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조 배 숙 조성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성 영 주 승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병국 최 최연 희 최 규 식 성 최용규 최인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현 애 자 홍 재 형 홍 문 표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투표의원(198인) 찬성의원(19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진화 고 흥 길 공성 진 곽성문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김기 춘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명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김양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용 갑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효 석 김 회 남 경 노 영 민 노 웅 래 김 정 필 노 현 송 노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학 진 맹 형 규 문 병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재 완 박세 환 박 승 환 박 진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복기 왕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렼 송 영 길 신 중 식 신 계 륜 신 국 환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양형일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조 엄호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혜 영 워 희 룡 유기준 유기홍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정복 유 필 우 이강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미경 이 병 이 명 규 이 방호 석 이상득 이 상 민 이 상 열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 승희 이시종 이 은 영 이 영 순 이용희 이 원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종구 이 해 이 혜 훈 이 화 영 봉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장 영 달 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헌 성 호 정 병 국 정 정세 균 정의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조 배 숙 조성 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성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옂 최 구 식 천 영 세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성 최 연 희 최용규 한 광 원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투표의원(199인)

찬성의원(19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진화 고 흥 길 공성 진 곽성문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혐 김 낙 성 김 낙 순 덕 규 김 덕 룡 김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문 수 석 준 김 병 호 김 부 겸 김선미 김 김 애 실 김양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원 기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정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춘 진 김 충 환 태 홍 김 태 환 김 김 혁 규 김 학 송 현 미 김 효 석 김 남 경 필 김희 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호 맹 형 문 석 호 문 학 진 규 민 병 두 문 희 상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회 태 배일도 백 원 우 복 기 왕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신 계 륜 송 영 길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아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양형일 안 영 근 양 승 조 엄호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기홍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정 복 유필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 계 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 석 현 이 상 민 이 상 열 이성권 이 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 은 영 이용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영 이 재 창 이인기 0] 재 오 이 종 걸 이 종 구 이 해 봉 이혜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장 복 심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갑 윤 정덕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조 배 숙 조성래 조성태 조 승 수 주성 영 주 승용 조정식 지 병 문 천 영 세 최 구 식 채 수 찬 최 규 식 최병국 최 최 연 희 성 최용규 최인기 최 재 천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준 표 홍 창 선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이 상 배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 투표의원(201인) 찬성의원(20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공성 진 곽성문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기춘 김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양수 김 영 덕 김 애 실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정 훈 김 재 유 김 재 홍 김정부 김 종 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효 석 남 경 필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박 찬 석 박 창 달 진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복기 왕 서 재 관 서 혜 석 서 갑 원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조 양형일 엄호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제 창 우 제 항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기홍 유 승 희 유 재 건 유정 복 유 인 태 유필우 윤 원 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 병 석 이상득 이 상 민 이상배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 승희 이 영 순 이용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인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걸 이종구 이 해 봉 이혜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갑 윤 정덕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조 배 숙 정화원 조성 래 조성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최 구 식 천 영 세 최 규 식 최규성 최병국 최 연 희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현 애 자 홍 문 표 황 우 여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진 하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 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진 화 곽성문 고 흥 길 구 논 회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광 원 김 기 춘 김 김기현 김 낙 성 낙 순 김 덕 규 김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무성 김 문 수 병 호 김 부 겸 김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김양수 김 영 덕 김 영 숙 영 주 김용 갑 김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훈 김정부 김 종 률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효 석 김 혁 규 김 현 미 김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노 회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세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신 중 식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국 환 신 학 용 심 재 철 심 상 정 심 재 덕 안 경 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조 양형일 엄호 성 오 영 오 제 세 우 상 호 식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유기준 유기홍 룡 유 승 회 유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필우 윤 원 호 이 강 두 윤 호 중 이 강 래 이경 이계진 숙 이경재 이 광 철 이기우 이 낙 연 이 근 식 이 명 규 이미경 이방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 승희 이 영 순 이용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인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재웅 이재 창 이 종 구 이혜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종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헍 전 여 옥 전 재 희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정 병 국 정 봉 주 정세 균 정의화 장 선 정 종 복 정 정청래 정화원 조 배 숙 조 성 조성태 조 승 수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최 구 식 천 영 세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회 최용규 최 성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현 애 자 한 선 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이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투표의원(207인) 찬성의원(207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곽성문 구 논 회 권경석 권 오 을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명 자 명 주 김 문 수 김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 애 실 김양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정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혁 규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희 정 노 영 민 웅 래 노 현 송 남 경 필 노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학 진 문 병 문 석 호 문 희 상 文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박 상 돈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준 진 배 일 도 밴 워 우 박 회 태 변 재 일 복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계 륜 신 중 식 심 상 정 신 국 환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률 아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아 택 수 양 승 조 양형일 엄호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기홍 유 승 희 유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 계 안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방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상배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 승 희 이 영 순 이용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인기 이 인 영 이 재 오 재 이 재 창 0] 웅 이종걸 이종구 이혜 이 화 영 훈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영 장 향 숙 장 달 전 병 허 전 여 옥 재 회 정 갑 윤 전 정덕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세균 의 화 정 장 선 정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조 배 숙 조성 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성 영 주 승 용 채 수 찬 지 병 문 최 구 식 최 병 국 처 영 세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현 애 자 홍 문 표 한 병 도 한 선 교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동

의안 투표의원(215인) 찬성의원(21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곽성문 구 논 회 권 경 권 영 석 권선택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기춘 김기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낙 성 김 덕 룡 김 동 철 김명자 김명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선미 김성조 김 애 실 긲 김양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용 갑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정부 김 정 훈 김 태 홍 김종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희정 남 경 필 노 회 찬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류 근 찬 호 문 학 진 민 병 두 문 석 호 문 희 상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 범 박세 환 박 재 완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진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변 재 배 일 도 일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재 관 서 갑 원 서 혜 석 선 병 렼 송 영 길 신 계 륜 신 학 용 신 국 환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수 양형일 양 승 조 엄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우 제 항 원 혜 영 창 원 희 룡 유 기 준 유기홍 유 승 희 유 인 태 유정 복 유필우 유 재 건 윤 원 호 유 호 중 이강두 이강래 이계진 이경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기우 이 낙 연 이미경 이 방호 이 명 규 이 병 이상득 이 상 민 석 이 상 배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 영 순 이용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재 오 이 인 기 이 인 영 이재웅 이재 창 이종걸 이종구 이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장 복 심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덕 구 정 문 헌 병 국 봉 주 정 정 정성호 정 세 균 정 의 화 장 선 정 종 복 정 정 청 화 원 조 배 숙 래 정 조 성 래 조성 태 조 승 수 주성 영 조 정 식 주 승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연 희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혀 애 자 홍 문 표 한 선 교 허 첡 황 우 여 홍 재 형 홍 준 표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 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215인)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곽성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낙 성 덕 규 김 기 현 김 낙 순 김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부 겸 김 김 석 준 김 선 미 김성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영 주 김 영 춘 김 김용 갑 김 원 기 재 윤 김 원 웅 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학 송 김 현 미 김 김 효 석 김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웅 래 노 회 찬 노 영 민 현 송 노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병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종 근 박 진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병 수 서 갑 원 서 재 서 혜 석 병 영 길 곾 선 렼 송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병 엽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호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기홍 유 승 회 유인 태 유 재 건 유정복 유필우 이강두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경 이경재 이계진 숙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군 현 이낙연 이 명 이미경 이 방호 규 이병석 이상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성권 이석 현 이 승 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인기 이 인 영 이 윤 성 이재 이종걸 이 재 오 웅 이 재 창 이종구 이주호 이 혜 훈 이 해 봉 이 화 영 임인배 임 종 석 임종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전 여 옥 전 재 희 헑 정 덕 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성호 정세 균 정의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청래 조 배 숙 조성 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성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채 수 찬 천 영 세 최구식 최병국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최용규 최 인 기 철 국 최 재 천 최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허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의원(3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투표의원(216인) 찬성의원(215인)

정화원

김 애 실

김기춘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진화 고 흥 길 곽성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기춘 김기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명자 김 덕 룡 명 주 김 문 수 김 병호 김 부 겸 김 김 석 준 김 애 실 김선미 김성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정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효 석

김희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호 노 웅 래 맹 형 규 문 병 호 류 근 찬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세 환 박 순 자 박 종 근 박 박 찬 석 진 박 창 달 박 형 준 배 일 도 박 회 태 백 원 우 변 재 일 복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국 환 신 학용 신 중 식 심 재 덕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경 률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형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유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기홍 유 승 회 유인 태 유 재 건 유정복 유필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기우 이 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 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회 이시종 이 영 순 이용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인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종걸 이 주 호 이 해 봉 이 종 구 이 철 우 이혜훈 임인배 임 종 석 이 화 영 임 종 인 임채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덕 구 정 두 언 정 정 문 헌 정 병 국 봉 주 정 정성호 정세 균 정의화 장 선 정 종 복 정 조 배 숙 정 청 래 정화원 조성래 조성 태 조승수 주 승 용 조 정 식 지 병 문 진 수 회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성 최 연 희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병 도 하 광 워 현 애 자 한 선 교 허 천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의원(1인)

박 승 환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

투표의원(202인) 찬성의원(195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재 섭 강 창 일 고진화 곽성문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영 길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낙 성 김 덕 룡 김 동 철 김명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성조 김 애 실 김양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원 기 김 정 부 김 춘 진 김 태 환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효 석 김희 선 김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병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재 완 박세 환 박 순 자 박 진 박 형 준 박 희 태 배일도 백 워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신 학 용 송 영 길 신 국 환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률 안 택 수 안 민 석 안 병 엽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워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우 제 창 원 희 룡 유기홍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정복 윤 원 호 윤 호 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군 현 이기우 이 낙연 이 명 이미경 규 이병석 이 상 열 이석현 이성권 이용희 이 승희 이시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종걸 이종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임 종 석 이 화 영 임 인 배 임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헌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성호 정세 균 정의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화원 조 배 숙 조성래 조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채수찬 천 영 세 최경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병국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처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애 자 홍 문 표 허 천 혅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진 하 기권의원(7인) 박 승 환 김 정 훈 노 웅 래 노 회 찬 안 영 근 이 혜 훈 조 승 수

○出席議員(285人)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화 고 진 화 고 흥 곽 성 문 길 공 성 진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권 영 길 택 권 영 권 오 을 김 광 원 세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7] 석 김 기 춘 김 낙 성 낙 순 김 기 혅 김 김 덕 규 덕 룡 김 동 철 김 김 맹 곤 김 명 자 명 주 김 무 성 문 병 호 김 김 수 김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양 수 김 영 덕 김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용 갑 우 남 김 김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유 김 재 홍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률 종 인 진 표 김 춘 진 김 긲 김 충 환 태 년 태 김 홍 김 태 환 김 김 학 송 김 학 원 한 김 혁 규 김 길 김 김 현 미 형 김 형 주 김 홍 오 일 김 효 석 김 희 김 희 나 경 원 선 정 남 경 필 노 영 민 웅 노 현 송 래 노 단 병 호 근 찬 맹 형 노 회 찬 류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민 병 두 박계동 박 근 혜 박 명 광 박 병 박 상 돈 박 성 범 석 박세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찬 석 박 창 달 박 회 배기 일 백 워 우 태 선 배 도 복 기 왕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영 손 봉 숙 송 길 송 영 선 신 계 륜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심 상 정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병 엽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호 성 염 동 연 양 형 일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오 제 세 우 유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워 혜 영 원 희 룡 유기홍 유선호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정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 계 안 이계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근 이 기 우 이 낙 연 식 이 명 규 이 방호 이 병 석 이 미 경 이 상 경 이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이성권 이 승 희 혅 이 영호 이시종 이영 순 이용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종걸 이종 이 주 호 이 철 우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복 심 임 태 희 장 경 수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병 국 정 문 헌 정 봉 주 정성호 정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조 배 숙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조 승 수 조 일 현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채 수 찬 진 영 천 영 세 천 정 최경환 최 구 식 배 최 규 성 최 병 국 최규 식 최 성 최 연 희 최용 규 최인기 최 재 성 최 재 천 한 광 원 한 명 숙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첡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出張議員(2人)

이 한 구 이호웅

○請暇議員(4人)

강 혜 숙 김 재 원 정 의 용 최 순 영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 무 총 리 0 해 찬 부 총 리 겸 0] 헌 재

재 정 경 제 부 장 관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丑
부 총 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통 일 부 장 관	정	동	영
외교통상부장관	반	기	문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국 방 부 장 관	윤	광	웅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오	영	교
문화관광부장관	정	동	채
농 림 부 장 관	박	홍	수
산 업 자 원 부 장 관	$\circ \rceil$	희	범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보건복지부장관	김	근	태
환 경 부 장 관	곽	결	호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건설교통부장관	강	동	석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오	거	돈
기 획 예 산 처 장 관	변	양	균
○出席政府委員			

여 성 부 차 관

신 혅

택

【報告事項】

○議員退職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이덕모	경북 영천	한나라당

(2월18일)

○常任委員長職務代理指定

여성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조 배 숙

3월2일 (5일간)

3월6일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이 경 숙

3월7일 (2일간)

3월8일

(2월24일)

○幹事改選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산업자원	김태홍	열린우리당
(2월18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재정경제	송영길	열린우리당
건설교통	정장선	된 원 T 너 경

(2월21일)

○特別委員辭任以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특별			
조치법위헌결정	이호웅	신학용	열린우리당
후속대책및지역			
균 형 발 전 특 별			

(2월23일)

○議案提出

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17일 정부 제출)

2월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2월17일 최성·유선호·배기선·김성곤·김 혁규·신기남·장영달·한명숙·정의용·이 화영·이종걸·고진화·이성권·최인기·우 제창·노현송·이원영·이은영·장향숙·박 명광·박영선·염동연 의원 발의)

2월1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신 국화 의원 대표발의)

(2월16일 신국환·박병석·최인기·류근찬· 최경환·이상배·최병국·임인배·김재원· 김광원·윤건영·안택수·우제창·김형오· 신기남·이상민·김명자·임종석·장윤석· 박창달·이경재·김효석 의원 발의)

2월18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17일 정부 제출)

2월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17일 정부 제출)

2월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2월18일 유기홍·김태홍·강창일·고진화·배일도·최순영·강기갑·강기정·강길부· 강혜숙·곽성문·구논회·권영길·김동철· 김원웅·김영숙·김재윤·김종률·김충환· 김태년·김현미·김형주·김홍일·노웅래· 노현송·노회찬·단병호·문병호·문학진· 민병두·박명광·박찬석·박창달·배기선· 백원우·복기왕·서갑원·선병렬·송영길· 오제세·우상호·우제항·유시민·윤건영· 윤원호 · 윤호중 · 이경숙 · 이미경 · 이성권 · 이영순 · 이은영 · 이인영 · 이재오 · 이종걸 · 이화영 · 장경수 · 장복심 · 장향숙 · 전병헌 · 정갑윤 · 정봉주 · 정장선 · 정청래 · 정화원 · 제종길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수 · 지병문 · 진수희 · 천영세 · 최용규 · 최인기 · 최재성 · 현애자 · 홍미영 · 황우여 의원 발의)

2월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藥事法 一部改正法律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월18일 강기정·김동철·양형일·정화원· 김선미·구논회·장향숙·김태홍·서갑원· 이인영·현애자·최규식·유기홍·김춘진· 제종길·이기우·유필우 의원 발의)

2월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 발의)

(2월21일 김희선·구논회·김명자·김영춘· 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 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 이상경·이시종·정봉주·최인기·최재성· 현애자 의원 발의)

附加價值稅法 一部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 의)

(2월21일 김희선·김명자·김영춘·김종률· 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엄호성· 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이상경· 이시종·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消費者保護法 全部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월22일 박영선·송영길·김명자·우제창· 최성·이종걸·정청래·민병두·문석호·김 영주·박명광 의원 발의)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김 효석 의원 대표발의)

(2월23일 김효석·한화갑·이낙연·유시민·류근찬·김성곤·최인기·허태열·김홍일· 신국환·남경필·김영춘·손봉숙·이혜훈 의 원 발의)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월23일 권영세·김재원·박세환·안상수· 유승민·전재희·김재경·이윤성·이계경· 정종복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월23일 김영춘·염동연·홍미영·류근찬· 김영숙·박순자·신중식·나경원·노현송· 이근식·김태홍·정성호·송영길·백원우· 정화원·강혜숙·신기남·김충환·전재희· 김재홍·박영선·이혜훈 의원 발의)

傳染病豫防法 一部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 의)

(2월23일 이영호·현애자·염동연·김선미· 노웅래·김명주·이철우·김우남·최용규· 이상열·이시종·신중식·김정훈·민병두 의 원 발의)

이상 2건 2월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한생명의 매각절차에 대한 감사청구안

(2월23일 권영세·이계경·김재원·박세환· 안상수·유승민·이윤성·김재경·전재희· 김희정·정종복·정병국 의원 발의)

대한생명의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안

(2월24일 이종구·이혜훈·박재완·한선교· 장윤석·정병국·김충환·김애실·김무성· 이상배·박순자·김정부·박세환·박성범· 이경재·최경환·심상정·김양수·노회찬 의 원 발의)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交通施設特別會計法 一部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월23일 이영호·현애자·염동연·노웅래· 김명주·이철우·우원식·김우남·최용규· 이상열·이시종·조일현·신중식·김정훈· 민병두 의원 발의)

2월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南北協力基金法 一部改正法律案(정문헌 의원 대표 발의)

(2월24일 정문헌·박세환·이혜훈·이해봉· 유선호·박재완·유기준·김영숙·진수희· 황진하·송영선·최병국·원희룡·전여옥· 김문수·박계동·신계륜·장영달·박성범· 임종석·한명숙·최성 의원 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월24일 최용규·노회찬 의원 외 167인 발 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兒童福祉法 一部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월24일 장향숙・이해봉・이혜훈・백원우・
안상수・박영선・김태홍・정장선・김현미・
임종석・박재완・서혜석・강혜숙・노현송・
황우여・김덕규・신중식・문학진・오제세・

구논회·유시민·우제창·엄호성·김영춘· 홍미영·강기정·허태열·권오을·고흥길·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월24일 김춘진·이경숙·엄호성·안상수· 김태홍·박계동·조승수·현애자·김선미· 김현미·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 건

(2월25일 의장 제의)

김충환 의원 발의)

2월26일 2월28일 (3일간)

○議案審査

대법관(양승태) 임명동의안

(2월7일 정부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2월23일 대법관(양승태)임명동의에관한인사 청문특별위원장 보고

대한민국정부와수단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 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 약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 준동의안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 안

대한민국과과테말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 동의안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 아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 동의안

대한민국과타일랜드왕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 동의안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 조약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 의안

(이상 11건 2004년11월24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2004년11월30일 정부 제출)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동의 안

(이상 4건 1월12일 정부 제출) (이상 16건 원안대로 의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2월18일 유기홍・김태홍・강창일・고진화・ 배일도 · 최순영 · 강기갑 · 강기정 강길부 · 강 혜숙 · 곽성문 · 구논회 · 권영길 · 김동철 · 김 원웅 · 김영숙 · 김재윤 · 김종률 · 김충환 · 김 태년 · 김현미 · 김형주 · 김홍일 · 노웅래 · 노 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문병호 · 문학진 · 민 병두 · 박명광 · 박찬석 · 박창달 · 배기선 · 백 원우ㆍ복기왕ㆍ서갑원ㆍ선병렬ㆍ송영길ㆍ신 중식 · 심상정 · 안상수 · 안택수 · 양승조 · 오 제세 · 우상호 · 우제항 · 유시민 · 윤건영 · 윤 원호 · 윤호중 · 이경숙 · 이미경 · 이성권 · 이 영순 · 이은영 · 이인영 · 이재오 · 이종걸 · 이 화영 · 장경수 · 장복심 · 장향숙 · 전병헌 · 정 갑윤 · 정봉주 · 정장선 · 정청래 · 정화원 · 제 종길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수 · 지병문 · 진 수희 · 천영세 · 최용규 · 최인기 · 최재성 · 현 애자·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17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 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2004년6월18일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건의안

(2월1일 김동철·김춘진·정의화·이종구· 천영세·이낙연·양형일·구논회·김선미· 김영주·조성래·이강래·조배숙·유기홍· 유시민·유필우·이기우·이상경·채수찬· 김부겸·김우남·김태년·김혁규·노영민· 문학진·신국환·신중식·이용희·이시종· 조일현·지병문·한광원·정세균·김기석· 김낙순·김맹곤·박상돈·우원식·우윤근· 원혜영·윤호중·이호웅·장복심·정장선· 주승용·최철국·오제세·김교홍·김원웅·

백원우 · 신계륜 · 이경숙 · 이인영 · 장영달 · 장향숙 · 정봉주 · 정청래 · 홍미영 · 최성 · 최 재성 · 강봉균 · 권선택 · 김한길 · 신기남 · 안 영근 · 양승조 · 우제창 · 이광재 · 이상민 · 이 원영 · 이은영 · 전병헌 · 정동채 · 강길부 · 강 성종・김영춘・김희선・문병호・문석호・박 병석 · 복기왕 · 송영길 · 유승희 · 최규성 · 최 재천 · 홍창선 · 강혜숙 · 김성곤 · 김현미 · 문 희상 · 박찬석 · 배기선 · 서갑원 · 유재건 · 이 철우・장경수・정성호・제종길・조성태・김 재홍 · 노웅래 · 노현송 · 신학용 · 안민석 · 우 제항 · 유선호 · 윤원호 · 이광철 · 이근식 · 이 화영·최규식·한병도·김재윤·김태홍·민 병두 · 박기춘 · 서재관 · 선병렬 · 심재덕 · 강 기정 · 우상호 · 유인태 · 강창일 · 염동연 · 이 재웅·강재섭·김성조·김양수·곽성문·김 무성 · 권오을 · 고진화 · 박재완 · 김재경 · 권 경석 · 김문수 · 김기춘 · 권철현 · 박진 · 박세 일 · 김태환 · 박계동 · 김충환 · 김용갑 · 심재 엽 · 박세환 · 서상기 · 박성범 · 김희정 · 김학 송 · 안경률 · 박형준 · 송영선 · 박찬숙 · 유승 민 · 박희태 · 안상수 · 엄호성 · 유기준 · 유정 복・홍준표・배일도・이주호・이계진・이계 경 · 이경재 · 서병수 · 임인배 · 이덕모 · 이병 석 · 진수희 · 장윤석 · 전여옥 · 이인기 · 정갑 윤 · 최연희 · 정병국 · 전재희 · 정두언 · 황우 여 · 정종복 · 정문헌 · 정화원 · 한선교 · 황진 하 · 최경환 · 정형근 · 최구식 · 강기갑 · 권영 길 · 이영순 · 심상정 · 최순영 · 단병호 · 노회 찬 · 김효석 · 손봉숙 · 이정일 · 이상열 · 이승 희 · 김홍일 · 한화갑 · 김낙성 · 정몽준 · 최인 기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議案撤回

觀光振興法中改正法律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8일 박형준·김양수·이계경·김 희정·정종복·권철현·이성권·정화원·허 태열·박승환·안홍준·정병국·유기준·김 석준·박재완 의원 발의)

2월18일 발의자 철회요구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8일 김희선·김영춘·김원웅· 김종률·김태홍·문학진·박순자·엄호성· 오시덕·오제세·유승희·이근식·이목희· 이상경·정성호·주승용·최재성·홍창선 의 원 발의)

2월22일 발의자 철회요구

○請願提出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재 승으로부터 이원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3 · 8 세계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2005년2월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 표 남인순 외 2인으로부터 박세환·이경숙· 단병호 의원 외 25인의 소개로 제출)

2월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사할린동포 피해배상 청구등에 관한 청원

(2005년2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5-190 김경순으로부터 김원웅·홍문표 의원의 소개 로 제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請願撤回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2월1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이호군으로부터 이계안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17일 청원자와 소개의원 철회요구

○書面質問書提出

사립학교 기부금 회계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 문서

(2월16일 박재완 의원 제출)

경제현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문서(5건)

(이상 5건 2월17일 전병헌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提出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질 문서에 대한 답변서

(2월17일 정부 제출)

특허관련 선 사용권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월2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2월18일 정부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